

의안번호	2202993
의 퇴 인	박성민 의원
회 답 일	2024. 10. 10.
추 계 번호	24A30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한 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 사람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개정안은 컨설팅 지원 외에 ①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법률에 명시하고(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②소상공인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계속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같은 조 제5항 신설)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제외

- ①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과 ②소상공인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한 일시상환 유예¹⁾는 2024년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에 따라 8~9월에 조치 완료된 사항으로, 기 시행 중인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국가재정의 추가 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 [참고자료 1]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일시상환 유예)

□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 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

-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 중인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기간을 유예한 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참고자료 2] 2024년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이에 개정안에 따라 컨설팅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기간을 유예한 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에 실시 중인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해당 지원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기존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추계에 필요한 지원 기준 및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기간을 유예한 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비용을 추계하려면 기존 사업(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의

1) 2024.9.23.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의 개정으로 반영됨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6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소진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기일 전이라도 채권회수절차를 취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대출금이자 등을 상환하여야 할 때부터 지체일수가 3개월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와 이에 따른 일시 전액 상환 요구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기일 전 채권회수절차는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수혜 대상 외에 추가로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범위와 컨설팅 신청률, 지원 요건 및 지원 수준 등을 정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컨설팅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며,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계획 수립이나 실시 방향에 따라 재정의 추가 투입 여부 및 수준이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 자를 대상으로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일시상환 유예)

Ⅲ.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		
1. 경영부담 완화		
[1] 비용부담 완화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채무걱정 털어드림” 3종 세트) 적극 추진		
○ (정책자금 상환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¹⁾ 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 + 연장시 적용되는 금리 ²⁾ 도 개선(‘24.8월~)		
1) 지원대상: (現)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 → (改) 업력·대출잔액 기준 폐지		
2) 연장시 적용금리: (現)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 (改) 기존 이용금리 +0.2%p		
3. 재기지원		
[1] 채무조정		
㉠ 채무 일시상환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폐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		
○ (일시상환 유예)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화(고시)		
V. 향후 추진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기관
1. 비용부담 완화		
▶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요건완화 및 가산금리 개선	‘24.8~	중기부
3. 재기지원		
▶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제도화	‘24.9	중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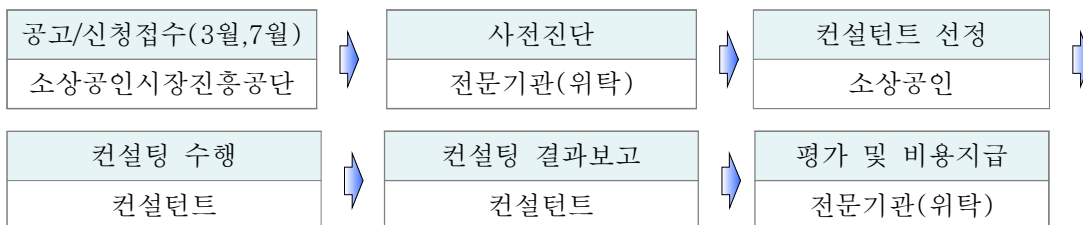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2024.7.3.)

[참고자료 2] 2024년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 (지원 대상/규모)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연 4,500건(70억원) 내외
 - (지원내용) 전문 컨설턴트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 (컨설턴트 매칭)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컨설턴트 선택제’와 전문기관 추천에 따른 ‘추천제’ 방식을 병행
 - － (지원조건) 컨설팅비용(30만원/1일) 최대120만원 이내(국비90%, 자부담10%). 단, 자부담 무료 대상* 해당 시 100% 국비 지원
- * 간이과세자, 연매출액 10,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등

경영	● 마케팅, 프랜차이즈, 직원·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브랜드·디자인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기술	● 이·미용 기술
	● 메뉴 개발, 화훼 기술, 세탁 기술 등
디지털 전환	● 판매방식, 경영방식의 온라인·디지털화
수출	● 해외시장조사, 준비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지원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